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공인회계사 징계시효 연장 >

■ 유영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06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명하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4. 22.
3. 회 부 일 : 2025. 4. 2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시효를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징계사유의 적발 및 그에 따른 징계가 위반행위로부터 여러 해가 경과된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미조치 31건 중 시효 임박 또는 시효경과 후 인지 건이 21건으로 68%로의 임박한 실정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에 대한 적법하고 투명한 감사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행정 및 금전제재 대비 징계 시효가 단기간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17 및 제48조)

###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17제2항 및 제48조제4항).

| 현행                                                                         | 개정안                                                 |
|----------------------------------------------------------------------------|-----------------------------------------------------|
| 제40조의17(징계) ① (생략)                                                         | 제40조의17(징계)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u>3년</u> 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② -----<br>-----<br>----- <u>5년</u> -----.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48조(징계) ① ~ ③ (생략)                                                        | 제48조(징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u>3년</u> 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 ④ -----<br>----- <u>5년</u> -----<br>-----<br>-----. |

-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등”)가 이 법의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2년 이하 직무정지,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징계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음.<sup>1)</sup>

#### 1)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7(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제40조의9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 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한 경우

- 이러한 징계시효는 일반적으로 법률관계 확정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당사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법률에서 징계시효 규정을 두고 있음.

- 
4.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5.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6.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위촉인에게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회계법인에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경우
  11. 제40조의14를 위반하여 1년에 180일 미만을 대한민국에 체류한 경우
  12.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에 누설한 경우
  13.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③ 외국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 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표 1]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 징계제도 개요

| 구분       | 공인회계사(§48)                                                                                                   | 외국공인회계사(§40의17)                                                                                                                                                                                                                                                                                                                                                                                                                                  |
|----------|--------------------------------------------------------------------------------------------------------------|--------------------------------------------------------------------------------------------------------------------------------------------------------------------------------------------------------------------------------------------------------------------------------------------------------------------------------------------------------------------------------------------------------------------------------------------------|
| 징계<br>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li> <li>공인회계사회회칙 위반</li> <li>품위손상 행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li> <li>공인회계사회회칙 위반</li> <li>품위손상 행위</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범위 외의 업무 수행</li> <li>법정 업무수행 방식 위반</li> <li>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 포함)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고용되거나 그 직책 겸임</li> <li>공인회계사 고용</li> <li>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직무를 공동 수행 또는 보수·수익을 분배</li> <li>원자격국 명칭이 포함된 명칭 미사용</li> <li>외국회계사무소 개설 시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 미표시</li> <li>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 미공시</li> <li>위촉계약 체결전 원자격국·업무범위 미고지</li> <li>회계법인에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 출자</li> <li>1년에 180일 미만 대한민국에 체류</li> <li>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li> </ul> |
| 징계<br>종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취소, 2년 이하 직무정지,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li> </ul>                        |                                                                                                                                                                                                                                                                                                                                                                                                                                                  |
| 징계<br>시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징계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징계 불가</li> </ul>                                 |                                                                                                                                                                                                                                                                                                                                                                                                                                                  |

[표 2] 전문자격사 징계시효 현황

| 구분    | 시효대상    | 시효기간                                    | 근거법령               |
|-------|---------|-----------------------------------------|--------------------|
| 의사    | 징계      | 면허취소: 시효없음<br>자격정지: 7년(진료비 허위청구)/5년(그외) | 의료법 §65, §66⑥      |
| 약사    | 징계      | 면허취소: 시효없음<br>자격정지: 7년(약제비 허위청구)/5년(그외) | 약사법 §79①,⑥         |
| 감정평가사 | 징계의결 요구 | 5년                                      | 감정평가법 §39⑦         |
| 변호사   | 징계 청구   | 3년                                      | 변호사법 §98의6         |
| 변리사   | 징계      | 3년                                      | 변리사법 §17④          |
| 세무사   | 징계      | 3년                                      | 세무사법 §17④          |
| 관세사   | 징계      | 3년                                      | 관세사법 §27⑥          |
| 회계사   | 징계      | 3년                                      | 공인회계사법 §40의17, §48 |

주: “시효대상”은 시효기간 도과 후 징계,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함

□ 한편, 공인회계사 등의 징계사유 적발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심사·감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 현행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감리의 사전적 절차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sup>2)</sup>

-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은 최근 공시 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 수정공시 권고로 해당 심사를 종결하되,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감리를 실시함.

○ 한편, “감리”란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기타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의미함.<sup>3)</sup>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②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종결한다.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법」상 감리업무의 주체는 증권선물위원회이나,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sup>4)</sup>는 감리의 대상을 기준으로 감리업무를 나누어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있음.
-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 결과 중대한 위반 등이 발견되는 경우 감리를 착수할 수 있으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감리 대상 회사를 정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알리는 등의 경우에는 심사 없이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생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 제8조에 따라 운영했는지에 대한 감리(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3. 회사 또는 회사의 감사인과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거래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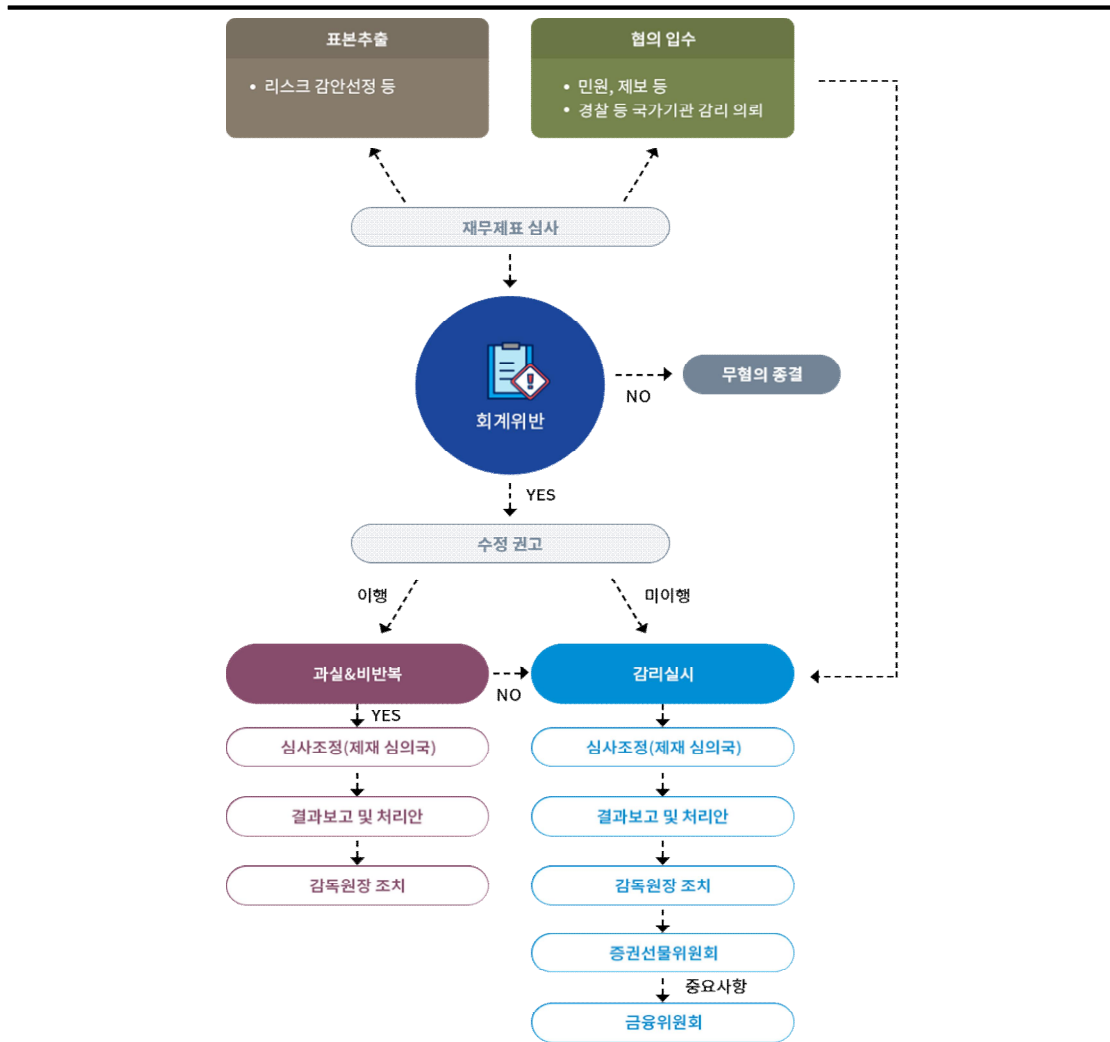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업무의 위탁)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이 영 제29조제2호·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 나.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감사인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9조제1호·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 다.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 조 제2항제15호 및 제16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감리를 할 수 있음.<sup>5)</sup>

[그림 1] 심사·감리업무 절차



(자료: 금융감독원)

##### 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회사가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선정된 경우(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
2.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 나. 재무제표 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과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감리 대상 회사를 정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알리는 경우

□ 그런데, 통상 심사·감리에 1년(심사 없는 감리)에서 1년 3개월(심사 후 감리)의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감리집행기관의 심사·감리 착수시점에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거나 심사·감리 기간에 비해 적게 남은 경우 등에는 징계사유가 적발되더라도 징계 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실제로,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징계 미조치 총 30건 중 징계시효 임박 또는 징계시효 경과 후 징계사유를 인지한 건이 전체의 약 67%인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 최근 5년 공인회계사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징계 미조치 현황

(단위: 건)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합계 |
|----------------------------|------|------|------|------|------|----|
| 징계시효 임박 <sup>1)</sup>      | -    | 2    | 11   | -    | -    | 13 |
| 징계시효 경과 후 인지 <sup>2)</sup> | 2    | -    | -    | -    | 5    | 7  |
| 감리 장기화 <sup>3)</sup>       | -    | -    | 2    | -    | 3    | 5  |
| 기타(코로나19 등) <sup>4)</sup>  | -    | -    | -    | 3    | 1    | 4  |
| 안전 누락 <sup>5)</sup>        | 1    | -    | -    | -    | -    | 1  |
| 합 계                        | 3    | 2    | 13   | 3    | 9    | 30 |

주: 회사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등 의결일 기준으로 기간 분류

주1) 징계시효 임박 : 심사·감리착수일로부터 징계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1년(심사 없는 감리) 또는 1년 3개월(심사 후 감리)보다 적게 남은 경우

2) 징계시효 경과 후 인지 : 징계시효가 지난 후 해당사건을 인지한 경우

3) 심사·감리착수일로부터 징계시효 완성일까지 1년(또는 1년 3개월)이 넘게 남았음에도 감리에 시일이 소요되어 징계시효를 도과한 경우

4) 코로나19 기간 중 심사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심사·감리에 착수했으나, 현장검사 제약, 담당직원 건강 등의 사유로 감리가 지연된 사례

5) 안전누락 :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위원회 간 상정 안전 관리 미흡으로 누락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등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등에 대한 징계가 심사·감리 이후에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시효 도과에 따른 징계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도 회계부정 방지 등 공인회계사의 공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징계시효 연장을 통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① 전문자격사 대부분에게 적용되고 있는 징계시효(3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② 징계시효 연장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불안정성 확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sup>6)</sup>, 당사자의 자료 유실에 따른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 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징계시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
| 문 의 처        |
| 02)6788-5111 |

6)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업무 수행에 있어 위축된 판단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보수적인 업무처리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